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545
----------	-------

발의연월일 : 2025. 8. 29.

발 의 자 : 최은석·성일중·김종양
임이자·배준영·김선교
이인선·박성훈·추경호
안철수·구자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화약류의 제조업을 하려는 사람은 제조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총포·화약류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불법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무허가 총기 제조 등을 예방하고 있음.

그런데 무허가 총기와 관련된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화약류를 불법 제조하는 자에게 총기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을 제공하는 행위, 제조를 위한 장소·시설·자금 또는 부품·소재·제작기술 등을 제공하는 조력 행위까지 엄중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포·화약류를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제조하려고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총포·화

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총포·화약류 제조를 위한 장소·시설·자금 또는 부품·소재·제작기술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불법무기류를 근절하려는 것임 (안 제8조의3 신설 등).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제73조제1호의2”를 “제8조의3제1항 및 제71조제1호의3”으로 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총포·화약류 불법 제조의 조력 금지) 누구든지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포·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제조하려고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정(情)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그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총포·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총포·화약류의 제조를 위한 장소·시설·자금 또는 부품·소재·제작기술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제20656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호의3을 제1호의5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3 및 제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총포·화약류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한 사람

1의4. 제8조의3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총포·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제조하려고 한다는 정을 알면서 총포·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총포·화약류의 제조를
위한 장소·시설·자금 또는 부품·소재·제작기술 등을 제공한
자

제72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 · 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 · 유포 금지) 누구든지 총포 · 화약류(생명 ·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u>제73조</u> <u>제1호의2</u> 에서 같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에 게시 ·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u><신 설></u>	제8조의2(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 · 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 · 유포 금지) ----- ----- ----- ----- <u>제8조의</u> <u>3제1항 및 제71조제1호의3</u> ---- ----- ----- ----- --. <u>제8조의3(총포 · 화약류 불법 제</u> <u>조의 조력 금지) 누구든지 제4</u> <u>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포 · 화</u> <u>약류를 제조하거나 제조하려고</u> <u>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u> <u>정(情)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u> <u>할 목적으로 그 개인, 법인 또</u> <u>는 단체에게 총포 · 화약류를</u> <u>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u> <u>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총</u> <u>포 · 화약류의 제조를 위한 장</u> <u>소 · 시설 · 자금 또는 부품 · 소</u>

법률 제20656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의2. (생략)

<신설>

<신설>

1의3. (생략)

재·제작기술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제20656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1조(벌칙) -----

-----.

1.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총포·화약류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한 사람

1의4. 제8조의3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총포·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제조하려고 한다는 정을 알면서 총포·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총포·화약류의 제조를 위한 장소·시설·자금 또는 부품·소재·제작기술 등을 제공한 자

1의5. (현행 제1호의3과 같음)

2. ~ 8. (생 략) 법률 제20656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3. <u>제8조의2를 위반하여 총포·화약류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한 사람</u> 4. ~ 10.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656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2조(벌칙) ----- ----- ----- -----. 1.·2. (현행과 같음) <u><삭 제></u> 4. ~ 10. (현행과 같음)
---	---